

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6월 18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, 포항시장

2)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3)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)

1) 개정이유

○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시행(2026.3.27.)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준인력 산정 결과를 반영한 정원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
- 총 정원: 2,305명 → 2,343명 (+38)

• 집행기관: 2,253명 → 2,291명 (+38)

• 의회사무기구: 52명 → 52명 (변동없음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(안 별표 3)

• 일반직 계	:	2,249명	→	2,287명	(+38)
- 2급	:	1명	→	1명	(변동없음)
- 3·4급	:	1명	→	1명	(")
- 4급	:	16명	→	16명	(")
- 5급	:	109명	→	109명	(")
- 6급이하	:	2,122명	→	2,160명	(+38)
※ 총 38명 (6급 +2명, 7급 +1명, 8급 +3명, 9급 +32명)					

3)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24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윤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통합돌봄 사업으로 증원된 인원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일선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,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